



2007.11.09.

이탈리아의 식품 수입관리제도

목차

1. 이탈리아의 식품 수입관리제도

내용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02-2194-7428, yutaka2@khidi.or.kr)

□ 이탈리아의 식품 수입관리제도

○ 식품법 개요

- 이탈리아의 식품 분야는 유럽 연합의 규칙 및 규정이 없는 제품은 제외하고 유럽 연합의 규칙과 규정을 따름.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EU 회원국에서 해당 국가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제조한 모든 제품은 다른 국가에서 다른 표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모든 EU 국가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음. EU 회원국에 들어올 때 표지가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어서 추가 검사 없이 이탈리아로 환적할 수 있고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수입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
- 이탈리아 당국은 이탈리아 특유의 법과 법령을 통하여 식품 및 농업에 대한 EU 규칙(지침 및 결정)을 이행. 하지만 EU의 규칙과 이탈리아의 규칙이 아직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많이 있음. 이 경우에 규칙은 국가의 법 및 법령에 의해 공포. 식품 안전은 보건부의 일차적 책임. 식품 생산은 농업부의 일차적 책임.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활동부(Ministry for Productive Activities: 표준, 표지 및 무역 진흥)와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관세 및 의무) 등, 이탈리아의 다른 부가 관련.
- 2003년 12월 13일,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이탈리아의 파르마(Parma)를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상설 지역으로 선정.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식품안전청(National Food Safety Authority)을 설계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음.
- EU 규칙 및 규정에 대한 두 개의 예외가 특정 첨가물 제한과 관련이 있음(착색 및 변성 녹말 포함). 또한 공중 보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제품(즉, 균형을 잃은 식이 제품)은 판매용으로 허가되지 않음. 이러한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규정을 준수해야함.
- 통조림 및/또는 냉동의 생선 제품, 육류 및 육류 기반의 제품, 우유, 저온 살균 크림, 연체동물 및 포도주와 같이 어떤 규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위생증명서가 필요(분석 증명서).

- 수입 허가서는 광천수, 육류 기반 제품, 통조림한 버섯, 연체동물 및 냉동 식품과 같이 EC/EU 규정에 기술된 특정 제품에만 필요함. 수입 허가서 요청은 대외무역부(Ministry of Foreign Trade)에 신청해야 함.
- 이탈리아에서 식품 및 영양에 대한 규정의 적용에 대한 감독은 일반적으로 보건부와 보건부의 중앙 및 지방 사무소가 맡으며 이러한 규정, 특히 위생법은 엄격하게 시행.

○ 표지 요건

1) 일반 요건

- 식품 표지 및 성분 규정은 대부분 EU 내에서 조화. 이탈리아는 EU 표준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곳에서 자신의 국가 요건을 정함. 이러한 표준의 일부는 쇠고기, 야생고기, 가공한 육류 제품, 유제품, 냉동 식품, 해산물, 감귤류, 알콜 음료, 스낵 식품 및 과자 제품의 수입에 방해.
- 표지와 관련된 두 개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 규정 2000/104/EC와 이사회 지침 2000/13/EC + CORRIGENDUM임. 이탈리아의 표지 및 성분에 관한 법률은 EU의 규칙 및 규정에 바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일부 식품에 대해 특별한 표지 및 성분 관련 규칙을 유지. 또한 이탈리아는 표지가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을 것을 요구. 많은 국제 기업들은 유럽 연합 전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국어 표지를 제공.
- 이탈리아에는 식품 표지를 규제하는 두 개의 법이 있으며, 둘 다 EU 지침을 이행한다. 한 법령은 의무 규격과 관련이 있으며(지침 13/2000/EC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령 2003/181은 표지에 표시해야 할 상세 정보, 표시 요건 및 허용된 예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영양 표지 규격과 관련이 있음.
- 소매 판매용으로 이탈리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음료 제품은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무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제품명
법에서 정한 이름.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에 관한 간략한 설명.

-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성분 및 식품 첨가물의 목록
GMO, 포장용 가스, 감미료, 아스파탐, 폴리올, 키니네 및 카페인 성분에 대해서는 표지에 특별한 표시를 해야 한다.
- 정량 성분 표시(QUID)
 - 특정 성분 또는 성분의 범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드시 수량을 표시해야 한다.
 - 해당 식품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이름에 성분 또는 성분의 범주가 나타나는 경우
 - 소비자가 해당 이름과 성분 또는 성분의 범주를 흔히 관련짓는 경우
 - 성분 또는 성분의 범주가 말, 그림 또는 그래프로 표지에 강조되는 경우
 - 식품의 특성을 설명하고 해당 식품을 다른 비슷한 제품과 구분하는데 성분 또는 성분의 범주가 필수적인 경우
- 모든 측정에 대한 미터 단위
미터 단위로 표시한 공칭 순 함량 또는 중량: (그램, 리터, 킬로그램, 센티리터 등으로 나타낸 중량) 실제 함량이 표시된 수량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작은 "e"를 표지에 사용할 수 있다.
- 유효일자
모든 포장에는 최소 보관 수명 기간이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 선호하는 용어는 "DD/MM/YY 전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다. 식품을 적절히 보관 및 준비한다면 소비의 시간 제한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 보관 조건
모든 특수한 보관 조건 또는 사용 조건을 표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사용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알코올 함량
이것은 부피로 1.2%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하는 음료에 요구된다.
- 유럽 연합 내에서 수립된 제조자, 포장자, 벤더, 수입자의 이름 또는 업체명과 주소
- 원산 국가
원산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없을 경우 소비자가 오도될 수 있는 경우

원산지에 관한 상세 설명.

- 로트 표기
이사회 지침 89/396/EEC에서는 식품이 속하는 로트를 식별하는 표기를 식품에 할 것을 요구한다.
- 의도된 용도에 대한 지침
필요한 경우
-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7장 J절 참조) 또는 급속 냉동 식품(7장 H절 참조)에 대해 특별한 표시가 있는 적용한 처리 방법

2) 건강 강조표시

- 영양 가치 표지 법령

- 표지 자체나 제품 광고에서 영양 함량 또는 이익에 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와 다른 EU 국가에서 영양 표지는 의무적이 아님. 수출국 영양 표지(영양 성분 표시[Nutrition Fact])의 존재를 영양 강조표시와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표지에 수출국 영양 표지를 나타내려면 이탈리아와 유럽의 표준 또한 따라서 영양 성분표를 작성해야 함.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수입품은 수출국의 표지에서 영양 정보가 포함된 부분 위에 이탈리아어로 된 표지를 붙임
- 영양 표지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할 정보는 다음 순서에 따라 그룹 1 또는 그룹 2로 구성되어야 함.

그룹 1

- 에너지값
-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방의 양

그룹 2

- 에너지값
- 단백질, 탄수화물, 당류, 지방, 포화지방산, 섬유 및 나트륨의 양
- 에너지값 및 성분비는 100 그램당 또는 100 밀리리터당 특정 단위로 표시. 비타민과 미네랄에 관한 정보는 일일권장량(RDA)의 비율로 표시.
- 표지 위에 나타내는 정보는 구매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

하여 숫자를 정렬한 표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공간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형으로 표시.

- 영양 표지 규칙은 이사회 지침 90/496/EEC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1993년 2월 16일 의 법령 제77호에서 규정.

- 건강 강조표시

- 이탈리아 및 EU의 표지 지침에서는 식품에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단언 또는 시사하는 의료 강조 표시는 금지.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품에 일반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다소 온화한 언급만이 허용. 건강 강조표시와 관련된 이탈리아의 표지 관련법은 특히 엄격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식품, 체중 감소/다이어트 식품, 유아식품 및 비타민을 수출하는 미국의 수출업자는 이탈리아의 수입업자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법규는 위반에 대한 명령, 의무 및 형벌을 규정.

- 다이어트용 식품 법령

- 1992년 1월 27일 의 법령 제111호의 부록 I을 수정하는 2001년 4월 23일자의 법령으로, 이탈리아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부의 특정 법령의 대상이 될 특정 영양 습관에 대해 정해진 모든 식품을 정함.

- 1) 신생아를 위한 제품 및 이유를 위한 제품
- 2) 시리얼 제품 및 신생아용 제품
- 3) 체중 감소 다이어트를 위한 저지방 제품
- 4) 특정 의료 목적용 저지방 제품
- 5) 운동선수 및 격렬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

-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제품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만들 수도 있음.

2004년 5월 21일, 이탈리아는 "생리학적" 효과를 위한 건강 보조 식품으로 인식된 식물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표지 적용과 관련된 이사회 지침 2002/46/CD를 채택하였음. 그 외에도 2002년 7월 18일 자의 회람 제3호에 따라 수년 동안 "약초"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중임.

- 새로운 알러지 표지

2003년 9월 29일,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EU의 일반적인 식품 표시 지침(지침 2000/13/EC)에 대한 중요한 수정안을 채택. 소비자가 모든 알러지 유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에 복합 성분의 모든 하위 성분을 열거하는 것이 의무적이 될 것.

○ 수입 절차

- 식품은 이탈리아의 법 및/또는 EU의 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 제품은 이탈리아로 들어올 때 수입 관련 문서를 검사하여 조사. 샘플의 시험 및 관련 분석은 보건 당국 또는 실험실에서 수행. 수입 관련 문서 검사 또는 샘플 시험에서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항구에 도착하고 나서 48시간 내에 수입 작업이 완료되고 제품이 유통.
- 숙련된 수입업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 즉, 특정 제품의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이탈리아 규제 당국과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 보건 지침의 해석이 항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통관장에서 보건 당국과 접촉하는 것도 권장.
- 가장 엄격한 검사를 받는 식품 분야는 동물에서 파생된 제품(특히 육류), 약초 제품 및 다이어트 제품.
- 이탈리아 세관의 사전 판정
 - 장기 계약에 서명하거나 상당한 가치의 화물을 보내기 전에, 수출국의 수출업자나 이탈리아의 수입업자가 먼저 해당 화물에 적용될 관세분류, 관세율 및 세금에 대한 공식적인 판정을 얻는 것이 현명. 이러한 요청은 이탈리아의 로마에 위치한 재무부의 관세청에 보내야 함. 요청서에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 그리고 세관이 제품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데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을 설명해야 함. 세관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동안에, 수입된 제품이 판정을 요청할 때 제공한 완전한 설명에 정확히 일치한다고 발견되면 사전 판정이 받아들여질 것임.

○ 식품관련 정부기관

- Ministero delle Politiche Agricole e Forestali(농업부)
 - Via XX Settembre 20 00187 Roma
 - 전화: +39-06-46651
 - www.politicheagricole.it
- Ministero delle Attivita' Produttive (생산활동부)(대외무역국)
 - Viale America 341 00144 Roma
 - 전 화 : 39 06 59931
 - 팩 스 : 39 06 5993 2203/2278
 - Dott.ssa Pascarelli (과일 및 채소 - 전화 3906 59932175)
 - Dott. Perri (사료 곡물 - 전화. 3906 5993 2471)
 - D.ssa Campaniello (육류, 유제품 - 전화. 3906 5993 2204)
 - Dott.ssa Nicosia (지방 및 기름- 전화. 3906 5993 2220)
- Ministero della Salute(보건부)
 - Direzione Generale per l'Igiene Alimenti e la Nutrizione Divisione VI
. A Piazza Marconi, Palazzo Italia 00144 Roma
 - 전화 39-06 5994
 - 팩스 39-065994 3676
- 보건부의 국가 수입 당국
 - Piazzale Marconi 25 00144 Eur-Rome(보건부)
 - 사무국
 - 전화 3906-5994-6948
 - 팩스 3906-5994-3190
 - Dr. Romano Marabelli (사무국장)
 - Dott. Piergiuseppe Faccelli(검사, 인증, 검역 및 기타 담당-전화 3906-5994-6613)
 - 열처리 제품 담당:
 - Dott.ssa Simonetta Bonati (동물 제품)
 - Dott.ssa Elvira Cecere (채소 제품)

- Dott.ssa Marinella Collauto (식품 표시 및 표준)
- Dott. Piergiuseppe Facelli (어업 제품 담당)
- Ministero delle Finanze(재무부)
 - Uff. Relazioni Internazionali (국제 사무국)
 - Viale dell'Aeronautica, 12200144 Roma
 - 전 화 : 39 06 5925967 / 54394256
 - 팩 스 : 39 06 5912983
 - 홈페이지 : www.finanze.it
- Agenzia delle Dogane (세관)
 - 담당자: Mario Andrea Guaiana, Customs Agency Director
 - Via M. Carucci 71 00143 Roma
 - 전 화 : +39-06-50241
 - 팩 스 : +39-06-5024-3076
 - 전자우편 : drd.roma.udr@ANTISPAMagenziadogane.it
 - 홈페이지 : www.agenziadogane.it
- Ufficio Centrale Metrico (중앙 계량 사무소)
 - Commercio e dell'Artigianato (생산활동부)
 - Direzione Generale per l'armonizzazione e la Tutela del Mercato
 - Via Antonio Bosio 15 00161 Roma
 - 전 화 : 39 -06-8416825
 - 팩 스 : 39-06-8414194
- UNI
 - Ente Nazionale Italiana di Unificazione (이탈리아 표준국)
 - 식품 및 음료 위원회
 - Via Battistotti Sassi 11-b 20133 Milan
 - 전 화 : 39 02 700241
 - 팩 스 : 39-02-70106106
- ICE
 - tituto per il Commercio Estero (이탈리아 무역 위원회)

- Via Liszt, 2100144 Roma
 - 전 화 : 06 59921
 - 홈페이지 : www.ice.it
- 문서 및 출판물의 출처:
- Sole 24 Ore Pirola S.P.A. Via Lomazzo 52 20514 Milano
 - 화 3902-3022-323